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낭만항구 목포
ROMANTIC PORT MOKPO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목포시

Contents

Ⅰ 보건 · 복지 분야

0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07
0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 인상 08
03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 자격 구분방식 개편 09
04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10
05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대상 확대 11
0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대상자 확대 지원 12
0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신설지원(신규) 13
08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신규) 14
09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15
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신규) 16
11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하수도요금 감면(신규) 17

Ⅱ 보육 · 인구 분야

01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21
02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 지원사업(신규) 22
03 한부모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 23
0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4
05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25
06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26
07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신규) 27

Ⅲ 농림 · 수산 분야

01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31
02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신규) 32
03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신규) 33
04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품목 확대 34
05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35
06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36
07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37
08 2023년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사업 38
09 어구의 생애 전주기 관리 강화(신규) 39

Ⅳ 안전 · 환경 분야

0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43
02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 · 보수 지원 44
03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신규) 45

Ⅴ 세제 · 일반행정 분야

01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신규) 49
02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0
03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제도 시행 51
04 중식시간 휴무제 전면시행 추진(신규) 52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분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목포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된 치매환자

- (기존) 소득기준 120% 이하 → **(확대)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 사업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치료비**(약제비·진료비) 실비 지원

▸ 지급절차

① 신　청 (대상자 → 치매안심센터)	⇨	② 서류심사 (치매안심센터)	⇨	③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공단/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 지원신청서 작성 • 본인부담금 청구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기존)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 (초과자)치매안심센터 지급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없이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시 행 일 : 2023년 3월예정 ※조례개정 이후 지급 예정

문　　의　하당보건지소　치매보건팀　☎ 270-429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0천원이 지원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보장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지원절차

신청	⇨	접수 및 조사	⇨	결정 및 급여지급
초기상담 및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		소득 및 자산조사 (시 통합조사관리팀)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시 기초생활보장팀)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 · 지원기준 1,536천원 (기준중위소득 30%)	• 선정 · 지원기준 1,620천원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048천원 (기준중위소득 40%)	• 선정기준 2,160천원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355천원 (기준중위소득 46%)	• 선정기준 2,538천원 (기준중위소득 47%)
교육급여 (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560천원 (기준중위소득 50%)	• 선정기준 2,700천원 (기준중위소득 50%)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5,400,964원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 270-3314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 자격 구분방식 개편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의료급여 자격을 1종·2종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 추진배경

▸ 의료급여제도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취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 타법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주요내용

▸ 타법 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1·2종 차등적용

- 1종 :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2종 : 18세이상 ~ 65세미만 중 1종 해당하지 않은자

※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타법 수급권자 자격 구분	• 근로능력 구분없이 일괄 1종	• 근로능력 유무 따라 1·2종 차등 적용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 270-3326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사망·실직·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이 5.47% 인상하여 4인 기준 1,620천원이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적으로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

□ 시책개요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재산 15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 사 업 비 : 2,563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전기요금, 연료비 등

▸ 추진절차

① 지원요청·신고 (수시)	⇨	② 현장확인 (1일 이내)	⇨	③지원결정·지급 (2일 이내)	⇨	④사후조사 (1개월 이내)

※ 지원요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소득기준	3,841천원이하(월, 4인기준)	➡	4,051천원이하(월, 4인기준)
지원금액	• 생계지원(4인) 1,536천원		• 생계지원4인) 1,620천원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270-826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대상 확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 업 비 : 2,755백만원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 국가보훈처 등록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시비$^{100\%}$)**
- 전몰군경·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만65세 미만) : 월 3만원 (도비$^{100\%}$)
- 전몰군경·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만65세 이상) : 월 11만원 (시비 8, 도비 3)

※ 참전명예수당 : 월 13만원 (시비 10, 도비 3) *전년 동일

◦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가구당 1백만원 이내 지원 (부부 공동 의료비 사용)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보훈명예수당	• 월 7만원 (시비) • 월 2만원 (도비) : 전몰군경·순직군경유족	• 월 8만원 (시비) • 월 3만원 (도비) :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자 추가)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 1인당 50만원 이내	• 가구당* 1백만원 이내 * 수권자 및 배우자 한정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 270-844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대상자 확대 지원 목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수당 대상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 시책개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목포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노인요양·재가시설, 바우처 사업 등 수익사업 복지시설 종사자

▸ 사 업 비 : 50백만원 (시비)

▸ 지 원 액 : 1인 50천원 (연/1회)

▸ 지급시기 : 2023. 1월 중

▸ 추진절차

시설종사자	⇨	사회복지시설장	⇨	시설 문 의
• 복지수당 신청 (증빙서류 제출)		• 복지수당 신청서 취합 • 종사자 명단 제출		• 대상자 자격(재직 등) 확인 • 개인별 복지수당 지급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복 지 수 당	목포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중 목포시 거주자에게 1인 5만원(연/1회)	목포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게 거주지 관계없이 1인 5만원(연/1회)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 270-888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신설지원 (신규) 목포시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 시책개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목포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노인요양·재가시설, 바우처 사업 등 수익사업 복지시설 종사자

▸ 사 업 비 : 85백만원 (시비)

▸ 지 원 액 : 1인 월 20~50천원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원)

▸ 지급시기 : 2023. 1. ~ 매월

▸ 추진절차

사회복지시설장		시설 담당부서		사회복지시설장
• 대상자 근속년수 확인 • 장기근속수당 보조금 신청	⇨	• 대상자 자격 확인 (근무년수 등) • 보조금 교부	⇨	• 장기근속수당 지급

□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신 설
장 기 근 속 수 당	-	목포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년수에 따라 1인 월 20~50천원 지원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 270-8885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신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 시책개요

▸ 사업대상 : 법 시행일('23.6.22.)에 운영 중인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사 업 비 : 121백만원(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CCTV 설치비 지원(시설 종류별 단가 한도 내 지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8ch 단가(2,750천원) 한도 내 지원
- 노인요양시설 : 16ch(4,950천원) 단가 한도 내 지원

▸ 추진절차

① 예산 확정내시 통보 ('22.12.) ⇨ ②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23.3.) ⇨ ③각 시설별 CCTV 설치 완료 ('23.5.) ⇨ ④CCTV 설치 현황전수 조사 (~'23.7.)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8ch 단가(2,750천원) 한도내 지원 • 노인요양시설 - 16ch 단가(4,950천원) 한도내 지원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 270-3344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취약계층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장애인연금 : 월 20,000원 ~ 403,180원

– 장애수당 : [재가] 월 60,000원 / [시설] 월 30,000원

▸ 추진절차

① 신청 안내	⇨	② 서비스 신청	⇨	③ 소득 및 자격 적합성 조사	⇨	④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지급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및 국민연금공단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재가·시설] 지급액 인상	• 장애인연금 : 월 2~38.75만원 • 장애수당 : [재가] 월4만원 [시설] 월2만원	➡ • 장애인연금 : 월 2~40.318만원 • 장애수당 : [재가] 월6만원 [시설] 월3만원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270-359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신규) 목포시

목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 시책개요

- ▸ 감면대상 : 목포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량의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 ▸ 시행시기 : 신청 후 다음 달 정기고지분부터 감면적용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접수
-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수도과(수문로 32, 트윈스타 5층)
-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 구비서류 : 감면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수도요금 고지서(생략가능)
- ▸ 감면 유의사항 : 이사, 수급정지, 자격변동 사항 발생 시 수도과에 신고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 사용량만큼 수도요금 부과	• 수급자 가구의 월 수도 요금에서 상수도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여 수도요금 부과

□ 시 행 일 : 2023. 2월 수도요금 정기고지분부터

문 의 수도과 요금팀 ☎ 270-3525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하수도요금 감면(신규) 목포시

목포시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구 세대에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 시책개요

▸ 감면대상 : 목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감면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월 사용량의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 다자녀가구 : 요금의 15%

▸ 시행시기 : 신청 후 다음 달 정기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목포시 수도과

※ 다자녀 감면 신청 접수는 수도과(수문로 32, 트윈스타 5층)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상하수도요금고지서(생략가능)
- 다자녀 가구 : 감면신청서, 등본, 상하수도요금고지서(생략가능)

▸ 유의사항 : 감면 중복 적용 불가,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제출 생략 가능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 사용량만큼 하수도 요금 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 월 하수도 요금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다자녀가구 : 월 하수도 요금의 15% 감면

□ 시 행 일 : 2023. 2월 상하수도요금 정기고지분부터

문 의 하수과 하수행정팀 ☎ 270-8519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육·인구 분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양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 도입된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연중)

▸ 사 업 량 : 987명

▸ 지원대상 : '22년 이후 출생한 만0~1세 아동 (※2022년 영아수당과 통합)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35만원~70만원

- 만 0세 : 월 7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 현금 18.6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 추진절차

① 신청	⇨	② 자격책정	⇨	③ 부모급여 지급
동 행정복지센터 -'22년 출생아는 영아수당 기 책정자료 활용 -'23년 출생아는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으로 신청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현금 : 매달 25일 계좌이체 -보육료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여성가족과 보육팀 ☎ 270-8221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 지원사업 (신규) 목포시

휴일에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 및 가정 양육부담 경감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12월

▸ 이용대상 : 생후 6개월 ~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등록 여부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운영시간 : 휴일, 토·일요일 09시~18시 ※ 명절(설·추석) 기간 제외

※ 1명당 최대 3시간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무료

▸ 신청방법 : 부모 사전 전화 예약 → 방문 시 신청서 등 작성

▸ 추진절차

사업 수행 어린이집 공개모집 선정	⇨	사전 전화예약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비스 이용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부모		신청 부모

□ 시 행 일 : 2023. 7. 1.부터

문 의 여성가족과 보육팀 ☎ 270-3336

한부모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청소년한부모 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가족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	② 조사 및 지원결정	⇨	③ 결정통지·지급
행정복지센터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지급 확대	· 연 8만3천원	· 연 9만3천원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270-328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

□ 시책개요

- ▸ 지원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발생가정
  ※ 양육공백 : 맞벌이, 취업 한부모(조손 포함), 장애부모, 다자녀
- ▸ 지원조건 : 중위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 ▸ 사업내용 :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파견
- ▸ 수행기관 : 목포시가족센터(센터장 최성숙)
- ▸ 추진절차

① 정부지원신청	⇨	② 지원유형 결정	⇨	③ 서비스 연계
행정복지센터		시군 → 서비스 기관		서비스 운영기관 → 이용가정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확대	(정부지원) 연 840시간	➡ (정부지원) 연 960시간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270-328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목포시 내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청년세대 유입 및 우리지역 정착 여건 마련을 위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 사 업 량 : 590부부
-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49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 지원금액 : 1부부당 2백만원
- ▸ 추진절차

신 청	▶	심사 및 선정	▶	문자통보	▶	축하금 지급
대상자 → 동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 대상자		목포시→ 대상자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거주요건	①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1년 이상 계속 주소·거주 ②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 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이 목포시에 주소·거주	①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거주 ②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목포시에 주소·거주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 270-8505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여가 활동 지원으로 청년에게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량 : 15,929명 (목포시 예산 60%)

▸ 신청기간

- 상반기 : 2023. 2. 1. ~ 2. 28. (1개월)
- 하반기 : 2023. 8. 1. ~ 8. 31. (1개월)

▸ 지원대상 : 전남 도내 2년 이상(공고일 기준)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19세~28세 청년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체크카드)

▸ 이용범위 : 도서, 영화, 공연, 학원수강, 체육시설, 여행 등 도내에서 사용

*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추진절차

신 청	심사(선정)	문자통보	카드발급	포인트 지급
대상자 → 동(방문), 은행(온라인)	목포시	목포시 → 대상자	은행→청년 *2022년 발급자는 포인트 바로 지급	은행 → 청년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지원연령	21세 ~ 28세 ('22년 1994~2001년생)	**19세 ~ 28세** ('23년 1995~2004년생)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 270-8505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신규) 목포시

목포시 내에 거주하는 학령 아동들에게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

□ 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23. 3. ~ 11.
-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입학대상자(약 2,100명)
- ▸ 지원금액 : 100,000원
- ▸ 내　　용 :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급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 추진절차

① 축하금 신청	⇨	② 관내거주 및 입학확인서 확인·선정	⇨	③ 입학 축하금 교부
관할 거주 행정복지센터(관내)		행정복지센터, 교육체육과		행정복지센터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신　　설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규모 : 2,100명 - 관내 거주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 지원금액 : 100,000원 ○ 지급형태 :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 요건 : 축하금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시 행 일 : 2023. 3월부터

문　　의　교육체육과　교육정책팀　☎ 270-3288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수산 분야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소비자 구매욕구 향상을 위해 관내 우수 농식품 업체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대상을 확대

□ 시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GAP인증업체(단체), 남도장터 입점업체

▸ 지원내용 : 업체별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업체당 최대 500만원)

- 우선지원 대상 : 친환경포장재 제작·구입 업체(단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업체(단체)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확대 지원제외 대상 축소	남도장터 입점업체 최근 3년간 동일·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자(지원주체 무관)	• GAP 인증업체(단체) • 남도 장터 입점업체 • 최근 1년간 동일·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자(지원주체 무관)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농업정책과 농업유통팀 ☎ 270-3355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 (신규)

식품제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규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제작비, 포장지 구입비를 지원

□ 시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관내 식품제조업체(수탁업체)와 2023년 1월 이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

※ 보조사업자는 위탁업체이며 관내 외의(서울, 경기 등) 위탁업체도 가능

▸ 지원내용 :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제작비, 포장지 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농업정책과 농업유통팀 ☎ 270-3355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신규)

GAP* 인증농가에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생산에서 판매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한 농산물 인증제조

□ 시책개요

- ▸ 사업기간 : 2023. 1. ~ 12.
- ▸ 사업대상 :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받으려는 농가
- ▸ 지원내용 : 농약 안전보관함 구입비 지원(최대 300천원)
-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추진절차

농업인	⇨	농업인	⇨	시	⇨	보조금 지원
GAP 인증 및 농약보관함 신청		농약보관함 구입 대금 선결제		신청서류 검토		농가 계좌입금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농업정책과 농업유통팀 ☎ 270-3355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품목 확대

GMO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올해부터 국내산 Non-GMO 품목(쌀가공품, 해바라기유)이 2개 추가

□ 시책개요

▸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의 의의

- 유전자 변형하지 않은 원료로 만든 식품을 학교급식에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지원내용 : 전남도에서 생산되는 국산 Non-GMO 식재료 11개 품목

※ `22년: 간장, 된장, 두부, 고추장, 밀가루, 조청, 유채유, 현미유, 옥수수콘
`23년: 쌀가공품, 해바라기유 추가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Non-GMO 식재료 지원품목의 확대	9개품목(간장, 된장, 두부, 고추장, 밀가루, 조청, 유채유, 현미유, 옥수수콘) 공급	2개품목 추가 (쌀가공품, 해바라기유)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농업정책과 농업유통팀 ☎ 270-3355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을 삭제하여 공익직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3. 1. ~ 12.
- ▸ 사 업 량 : 138ha
- ▸ 사 업 비 : 300,000천원(기금 100%)
-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 ▸ 지원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 면적직불금 : 농지면적 구간별 차등 지급(논 178만원/ha, 밭 134만원/ha)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지급대상 농지 요건	•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 ⬇ * 논농업은 '98 ~ '00년, 밭농업은 '12 ~ '14년, 조건불리는 '03 ~ '05년에 이용된 농지	•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 ⬇ * 논농업은 '98 ~ '00년, 밭농업은 '12 ~ '14년, 조건불리는 '03 ~ '05년에 이용된 농지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 ☎ 270-3536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1월1일부터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 우유류는 2031.1.1.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소비기한이란 무엇인가요?

-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으로 식품의 맛, 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인 품질안전한계기한의 80~90%로 설정

※ 유통기한: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품질안전한계기한의 60~70% 설정

▸ 어떤점이 도움이 되나요?

- 소비자의 섭취 가능여부 혼란방지 및 식품 폐기물 감소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운영,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경쟁력 향상

□ 달라지는 내용

내 용	종 전	변 경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판매 가능한 유통기한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 ☎ 270-8472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귀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해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생활비)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창업 초기 귀어한 청년어업인의 안정적 정착, 어촌 이탈 방지 및 우수 청년인력 어촌 유치를 위해 매월(3년 동안) 어가경영 지원금(생활비)을 지원

▸ 지원금액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자금용도 : 어가 경영비(그물, 어구 등 각종 기자재) 및 가계자금(병원, 주유, 식료품 등)으로 사용 가능

▸ 추진절차

① 사업안내 및 홍보	⇨	② 사업대상자 선정	⇨	③ 보조금 교부	⇨	④ 결과 제출
해수부→전라남도→목포시→어업인		목포시		해수부→전라남도→목포시→어업인		목포시→전라남도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 지원자격 (지원자격 추가) • 지원금액 확대 (월별 10만원 증액)	• 전년도 사업 선정자, 귀어·후계경영인 등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수산물 유통·가공 사업자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수산진흥과 수산진흥팀 ☎ 270-3610

2023년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사업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스티로폼(발포부표)을 처리하여 해양쓰레기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회수된 스티로폼 부표를 처리하여 해양쓰레기 방지

▸ 사업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중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부표를 구입한 자(어촌계 등)

▸ 사업내용 : 인증 부표 보급시 회수된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② 사업자선정	③ 계약체결	④ 사업추진	⑤ 사업정산
보조사업자 → 목포시	목포시	보조사업자 ↕ 처리업체	보조사업자 (부표처리)	보조사업자 → 목포시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지원 비율 변경	도 비 18% 시 비 42% 자부담 40%	국 비 30% 도 비 21% 시 비 49%

※ (당초) 자부담 40% → (변경) 자부담 0%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수산진흥과 어업지원팀 ☎ 270-3413

어구의 생애 전주기 관리 강화 (신규)

폐어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구실명제" 및 "어구일제 회수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어구관리를 강화

□ 개정개요

▸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전주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 내에 어구 관련조문 신설

▸ 어구실명제의 법률 격상

- 적용업종 : (근해) 자망·안강망·통발, (연안) 자망·개량안강망·통발, (구획) 실뱀장어 안강망

▸ 어구 일제회수제의 도입

- 정부가 어구 일제 회수 해역 및 기간을 설정하여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 폐어구 및 유실 어구를 회수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

※ 어구실태조사에 따라 수거 필요성이 강한 해역을 지정해 어한기에 수거

- 어구 회수 소유자 부담 범위 : (폐 어 구) 수거·처리·보관 비용의 전부, (유실어구) 수거·처리·보관 비용의 일부

□ 신설되는 내용

구 분	신 설
생산관리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 생산·판매기록 등 보존(3년) 의무화
판매관리	어구 실태조사 및 판매량과 판매방법 등 제한 근거 도입
사용관리	어구실명제를 법률로 격상, 처벌 및 생분해성 어구 사용 강화
수거관리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어구 일제회수제' 도입

□ 시 행 일 : 2023. 1. 12.부터

문 의 수산진흥과 어업지원팀 ☎ 270-3411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 · 환경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목포시

비휠체어 장애인 대상 바우처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콜 대기시간 단축 및 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이동편의 증진

□ 시책개요

- ▸ 운영기간 : 2023. 1. ~
- ▸ 운영대수 : 12대(목포시 관내 택시)
- ▸ 운행지역 : 목포시 관내(관외 지역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 ▸ 운행시간 : 07시 ~ 22시(택시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 배차 제한)
- ▸ 사 업 비 : 345,000천원
- ▸ 운영방법 : 기존 행복콜 운영방식과 동일(광역콜센터 배차 지정⇒운행)
- ▸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일반택시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비휠체어 교통약자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교통약자 수송시 장애인콜택시(21대) 및 임차택시(4대) 운영	➡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택시 12대 운영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교통행정과 운수사업팀 ☎ 270-3328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목포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2.

▸ 지원분야 : 단지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 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안등의 유지보수(LED등 교체)
- 단지 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
- 공중화장실, 하수도 유지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장애인 편익시설, 위험시설물 처리
-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원비용 : 총 공사비 6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 50% 이내 지원

※ 단, 50세대 이하이며 20년 이상된 영세단지는 최대 80%까지 지원

▸ 지원절차

① 지원계획 공고	⇨	② 보조금 지원신청	⇨	③ 지원심사
(목포시)		(공동주택→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④ 지원액 통보	⇦	**⑤ 사업실시 후 정산보고**	⇦	**⑥ 보조금 교부**
(시→공동주택)		(공동주택→시)		(시→공동주택)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기준 변경	총 공사비 4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하여 50%이내 지원	➡	총 공사비 6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하여 50%이내 지원

□ 시 행 일 : 2023. 2월부터

문 의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팀 ☎ 270-3474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신규) 목포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사업 실시

□ 추진배경

▸ 최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 증가로 인해 이웃간의 법적 분쟁 등 사회적 문제 대두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2.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된 다자녀 가정

- 초등학생 이하 2자녀 이상 가정 지원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함

▸ 지원물품 : 층간소음 저감매트(세대당 1개 지원)

▸ 신청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사업 공고 및 안내 후 지원 신청 가능
- 지원신청에 따른 선착순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 뒷자리 미기재)

▸ 지원절차

① 지원계획 공고	⇨	② 저감매트 지원신청	⇨	③ 신청확인 및 지원
(목포시)		(대상시민→시)		(시→대상시민)

□ 시 행 일 : 2023. 2월부터

문 의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팀 ☎ 270-3474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 · 일반행정 분야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신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 시책개요

▸ 기부주체 : 개인 (법인,이해관계인 불가)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 부 액 :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 례 품 :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 제공

▸ 기부방법

-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시스템 (https://www.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전국 모든 농협창구

① 기부	⇨	② 답례품선택	⇨	③ 답례품발송	⇨	④ 기부자
· 고향사랑e음시스템 · 전국 농협창구		고향사랑e음시스템		답례품 공급업체		답례품 수령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

▸ 사용처 : 취약계층 · 청소년지원, 문화 · 예술 · 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

□ 답례품 현황

구 분	품 목	구 분	품 목
지역사랑상품권	목포사랑상품권	관광 · 체험상품	해상케이블카탑승권
홍 어	홍어	수 산 물	조기, 병어, 고등어
김	곱창김, 조미김 김스낵, 김자반볶음	수 산 가 공 식 품	굴비, 고추장굴비, 반건조 민어, 새우젓, 전복장, 새우장, 매생이 세트 전복톳밥,전복내장미역국
건 어 물 세 트	내고장 꾸러미 건어물세트 1,2		
농 산 물	호라산밀	사 회 적 기 업 생 산 품	드립백커피
기 념 품	목포이야기비누세트 비파주방비누세트	기 타	크림,새우바게트 세트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세정과 세정팀 ☎ 270- 8658, 8618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3년부터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할인율 변경

□ 시책개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납부기간

-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16일~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16일~6월 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16일~9월 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방 문 : 목포시청 세정과,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신청
- 온라인 :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 자동차세 향후 연납 할인율 변경

-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9.15%에서 6.4%로 변경
- 2024년에는 4.5%, 2025년 이후에는 2.7%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1월 연납 : 9.15% 세액공제 · 3월 연납 : 7.5% 세액공제 · 6월 연납 :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2.5% 세액공제	· 1월 연납 :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5.2% 세액공제 · 6월 연납 : 3.5% 세액공제 · 9월 연납 : 1.7% 세액공제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세정과 부과2팀 ☎ 270-8454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제도 시행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時價) 수준으로 과세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실질 가치를 반영

□ 시가인정액 제도 개요

▸ 정 의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적 용 : 무상취득(증여) 취득세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증여취득은 종전과 같이 시가표준액 적용 가능

▸ 시가 인정액 적용 방법

- (1순위) 취득재산의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내 시가인정액
- (2순위) 취득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시가인정액

※ 1,2순위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 2년이내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시가인정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

- (3순위) 1,2순위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취득세 시가인정액은 증여세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 평가액 산정기준과 동일함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액 제도 변경	• 취득일 기준 시가표준액	• 평가기간내 시가인정액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 해당 부동산 평가기간 - 취득일 전 6개월 ~ 취득일 후 3개월 • 유사 부동산 평가기간 - 취득일 전 6개월 ~ 신고일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문 의 세정과 부과1팀 ☎ 270-3498

중식시간 휴무제 전면시행 추진 (신규) 목포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과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식시간 휴무제를 추진하고자 함

□ 시책개요

▸ 추진시기 : 2023. 1. 2.(월) 전면 시행

▸ 대상부서 : 목포시 전 부서(민원봉사실은 제도 정착 시까지 1월 민원창구 정상 운영)

▸ 방　　법 : 중식시간(12~13시) 휴식 후 13시 업무 재개

▸ 그동안 추진사항

- 중식시간 휴무제 8개동 시범 시행(안내인력 배치) : '22. 10. ~ 12.
- 전 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완료(민원봉사실 추진) : '22. 10. ~ 12.
- 대시민 집중 홍보(홍보물 설치, 보도자료 배포, 무인발급기 사용영상 제작 등)

▸ 향후계획

- 신규 시행부서(15개동) 혼선 방지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안내를 위한 자체 근무조 편성·운영(1개월)
- 지속적 홍보 및 의견수렴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민원발생 최소화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중식시간 민원사무 운영	부서 실정에 맞춰 교대근무 등 자체 운영	➡ 전 부서 중식시간 통일(12~13시)

□ 시 행 일 : 2023. 1. 2.부터

문　　의 자치행정과　서무팀　☎ 270-8340